

사학기관 감사증명서



(03145)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전화 (02) 397 6700
팩스 (02) 730 9559
www.samdukpa.co.kr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회 귀중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

우리는 별첨된 학교법인 광운학원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학교법인 광운학원의 일반업무회계 및 법인이 설립한 광운대학교 교비회계의 2021년 2월 28일과 2020년 2월 29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자금계산서 및 운영계산서와 합산자금계산서 및 합산운영계산서, 2021년 2월 28일과 2020년 2월 29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및 합산대차대조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수익사업의 2021년 2월 28일과 2020년 2월 29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학교법인 및 설치학교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수익사업의 재무제표는 각각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준하여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회계감사기준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 및 유의사항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광운학원의 일반업무회계 및 법인이 설립한 광운대학교 교비회계의 재무제표 및 합산재무제표는 2021년 2월 28일과 2020년 2월 29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자금수지와 재무성과와 2021년 2월 28일과 2020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사업회계의 재무제표는 2021년 2월 28일과 2020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각각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준하여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비회계에 속하는 2021년 2월 28일과 2020년 2월 29일에 종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수입 및 지출내역은 보조금관리예관법률, 동법 시행령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법규의 요구 사항에 대한 보고

우리는 별첨된 학교법인 광운학원의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기타법규의 요구 사항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학교법인 및 설치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 사립학교법,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건전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를 방지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인 책임

우리의 책임은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을 확인하고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회계감사기준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에 따라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기준 및 유의사항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금액과 공시 사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과 관련하여 학교법인의 경영진에 대한 질의, 관련 인허가기관이나 규제기관과의 왕복문서 검사, 내부감사인 면담 및 감사보고서의 열람에 의하여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확인 의견

우리의 확인결과 법규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삼 덕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이 용 모



2021년 4월 13일

재무제표 외 확인사항 집계표

회계연도	2020.03.01 ~ 2021.02.28	학교법인명	학교법인 광운학원	대학교명	광운대학교
------	-------------------------	-------	--------------	------	-------

확인 사항	위반여부			
	법인에 속하는 회계		학교에 속하는 회계	
	일반업무회계	수익사업회계	교비회계	학교기업회계
1. 관할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하였는지 여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항은 없음			
2. 교비회계 수입 또는 지출 처리 시 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비회계에 세입되어야 할 자금을 다른 회계에서 세입처리하였는지 여부 나. 교비회계의 자금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출 범위 외의 용도로 지출하였는지 여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항은 없음			
3. 재산 취득 시 등기·등록 기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항은 없음			
4. 사학기관이 결산 상 보유한 계좌 내역과 금융기관을 통해 조회한 계좌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항은 없음			
5. 이월금 구분(사고·명시·기타이월)이 적정한지 여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항은 없음			
6.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항은 없음			
7. 그 밖에 외부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항은 없음			

재무제표 외 확인사항 세부 내역

회계연도	2020.03.01 ~ 2021.02.28	학교법인명	학교법인 광운학원	대학교명	광운대학교
------	-------------------------	-------	--------------	------	-------

확인 사항	위반내용	관련 법령	위반 금액 (단위 : 천원)
1. 관할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하였는지 여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항은 없음.	사립학교법 제 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2. 교비회계 수입 또는 지출 처리 시 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비회계에 세입되어야 할 자금을 다른 회계에서 세입처리하였는지 여부 나. 교비회계의 자금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출 범위 외의 용도로 지출하였는지 여부		사립학교법 제 29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
3. 재산 취득 시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 44조	-
4. 사학기관이 결산 상 보유한 계좌 내역과 금융기관을 통해 조회한 계좌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5조	-
5. 이월금 구분(사고·명시·기타이월)이 적정한지 여부		사립학교법 제 32조의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 22조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1조	-
6.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이 수익계약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수익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 35조	-
7. 그 밖에 외부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	-
(-) 건			